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6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이광재 · 백혜련 · 박지혜
김용만 · 이재강 · 전용기
김병주 · 허성무 · 이연희
조승래 · 윤종균 · 박희승
이상식 · 박지원 · 정태호
이수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시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1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가 필요하지 아니한 반환공여구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50년”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 “특례”를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중 일부를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시행자) ①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 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u>지방자치단체</u> 3.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사업시행자)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출연한 기관</u>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⑧ (생 략) <u><신 설></u>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지상 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가 필요하지 아 니한 반환공여구역을 우선적으 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u>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신설>

-----50년-----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공유지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를 해당 재산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③ (생략)

<신설>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중 일부를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